

2024학년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명지대학교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결과 보고서

2024. 2.



명지대학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예방 중심적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Zero 달성]

명지대학교는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및 연구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 1.**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경영 방침 실천을 위해 각자의 책임과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 3.** 교내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4.**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024년 1월

명지대학교 총장 유 병 진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5
1. 목표 및 기본방향	6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8
3. 2024학년도 안전관리 업무 계획	1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8
1. 재난	19
① 재난의 종류와 사고대응	19
2. 안전사고	25
① 대학 안전사고	25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31
③ 연구실사고	33
3. 감염병 확산	35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5
4. 범죄	46
① 일반범죄	46
② 성범죄	51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65
① 산업재해	65
② 중대재해	71
6. 기타	77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77

목 차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79
1. 대학보험(공제) 가입	80
① 총괄 현황	80
②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80
③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82
④ 연구실안전보험(공제)	84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교육·훈련	85
1. 재난안전 교육·훈련	86
2. 비상대비 교육·훈련	88
3. 연구실 교육·훈련	89
4. 학생안전 교육·훈련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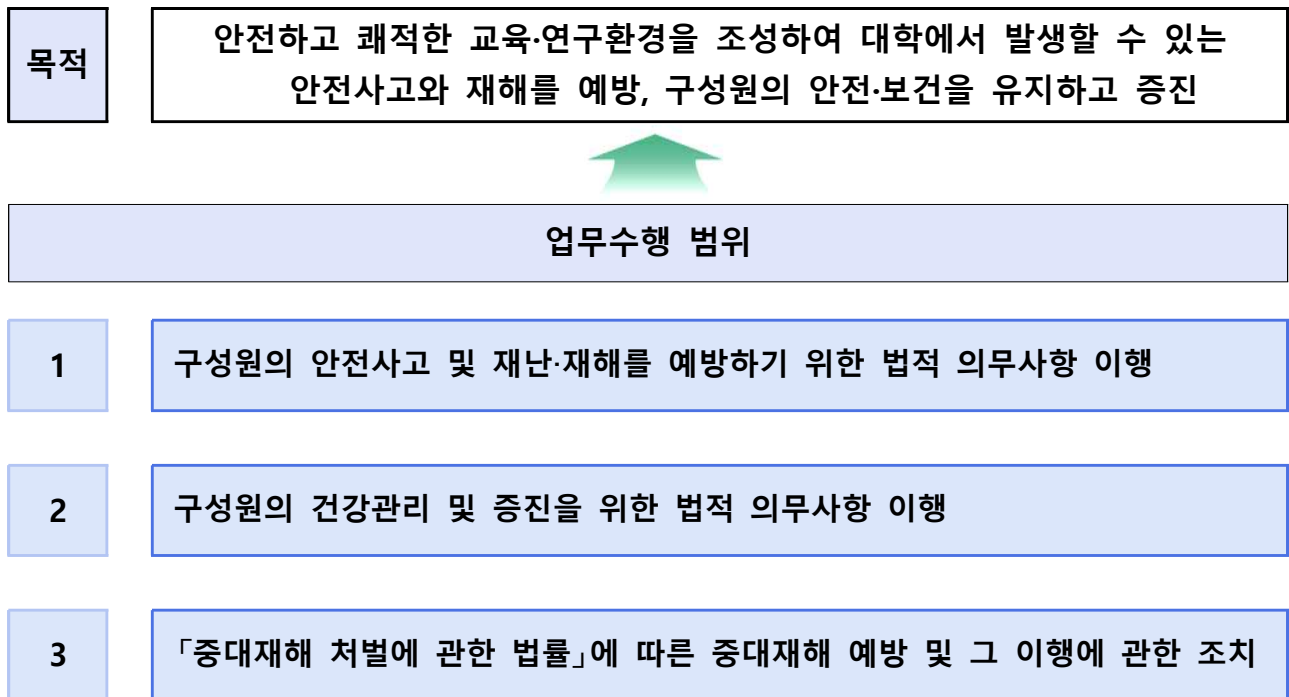
Ⅰ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목적 및 기본방향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1. 수립 목적



1.2. 기본 방향

-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 대학 소속 구성원들과 더불어 교내 도급용역 업체, 업무장 종사자들의 안전까지 도모하는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개선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 능력 제고
-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

1.3.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2.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2.1. 학교 안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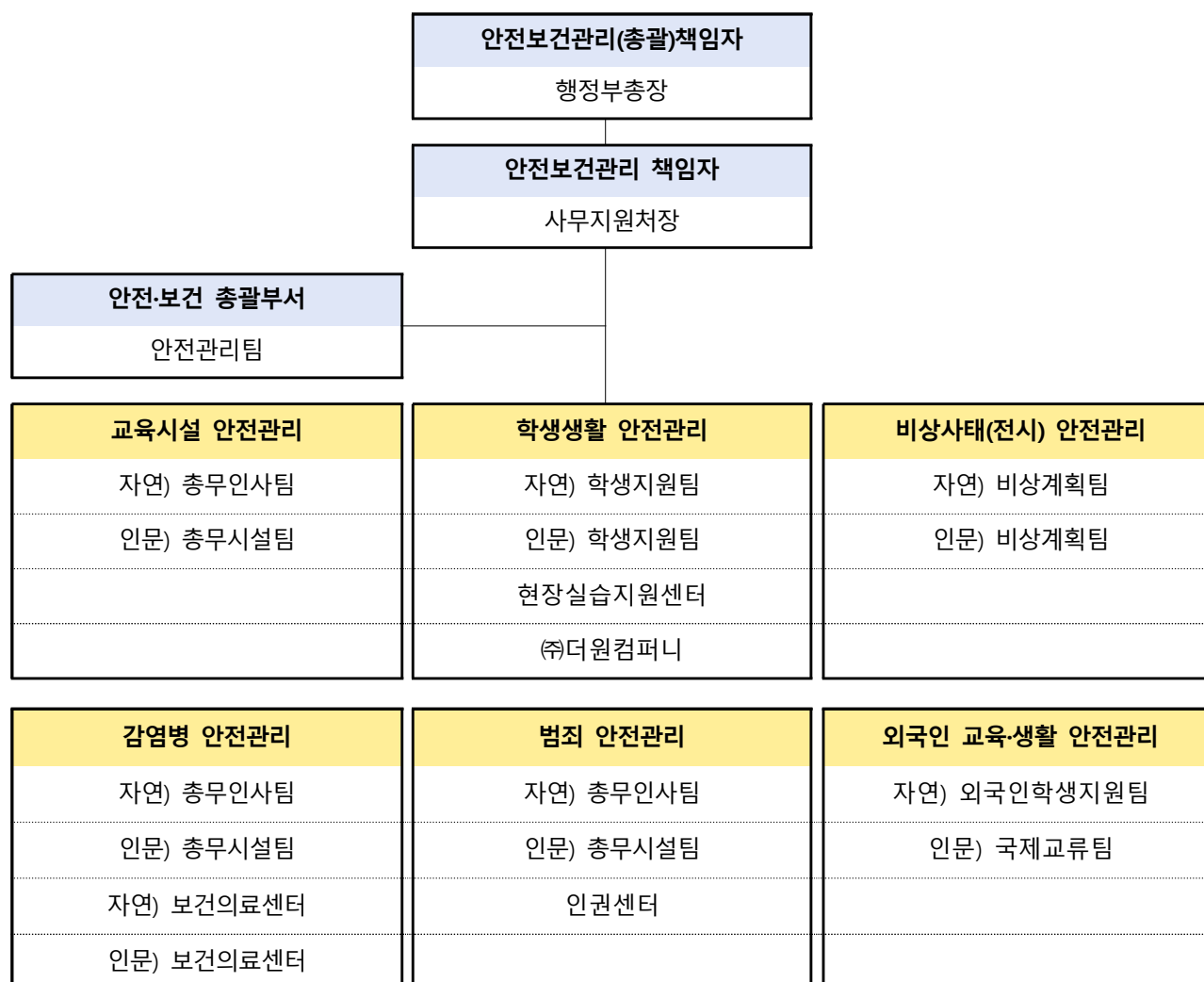
2.1.1. 학교 기본현황

학교명	명지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자연캠퍼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전 화	02-300-1596	FAX	-
		홈페이지	https://www.mju.ac.kr
총장	유병진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박재현 (직책: 행정 부총장)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12,653	2,131	14,784	(자연+ 인문)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종사자 (도급용역 포함)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422	502	120	-	-	1,044

2.1.2. 대학 내 안전관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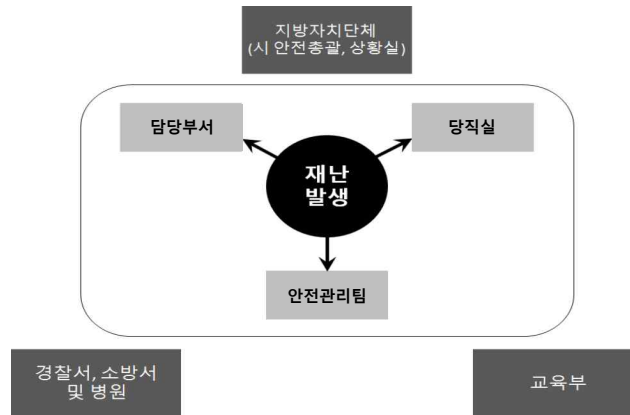


2.1.3. 안전관리 조직의 주요 단위 업무

주요 단위 업무		담당부서	비고
1.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팀	
2. 연구실안전관리			
3. 방사선안전관리			
4. LMO(생물)안전관리			
5. 교육시설 안전관리	5-1. 계절별 재해취약 교육시설 안전점검	(인문/자연)안전관리팀 자연) 시설관리팀 인문) 총무시설팀	
	5-2. 건축물 안전관리(외벽 마감재)		
	5-3. 법정 특별관리시설 안전관리		
	5-4.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5-5. 전기 안전관리		
	5-6. 소방 안전관리		
	5-7. 기계설비 안전관리		
	5-8. 가스 안전관리		
	5-9. 승강기 안전관리		
	5-10. 교내 시설 이용의 안전		
6. 학생생활 안전관리	6-1. 교통(보행) 안전관리	자연) 총무인사팀 인문) 총무시설팀 (자연/인문) 학생지원팀	
	6-2. 학생연수 및 행사 안전관리	(자연/인문) 학생지원팀	
	6-3. 현장실습 안전관리	(자연/인문) 학생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6-4. 생활관 안전관리	(주)더원컴퍼니	
7. 비상사태(전시) 안전관리		비상계획팀	
8. 감염병(전염성) 안전관리		자연) 총무인사팀 인문) 총무시설팀 (자연/인문) 보건의료센터	
9. 범죄 안전관리	9-1. 일반범죄, 경비, 출입통제 등	자연) 총무인사팀 인문) 총무시설팀	
	9-2.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센터	
10. 외국인 교육·생활 안전관리		자연) 외국인학생지원팀 인문) 국제교류팀	

2.2. 대학 비상근무체계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

2.2.1. 비상 시 상황대응



○ 재난 심각단계 이전

담당부서 각 재난별 담당부서	당직실 야간대응	안전관리팀 상황 총괄
--------------------	-------------	----------------

○ 재난 심각단계

담당부서 각 재난별 담당부서	합동상황실 주야대응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주야대응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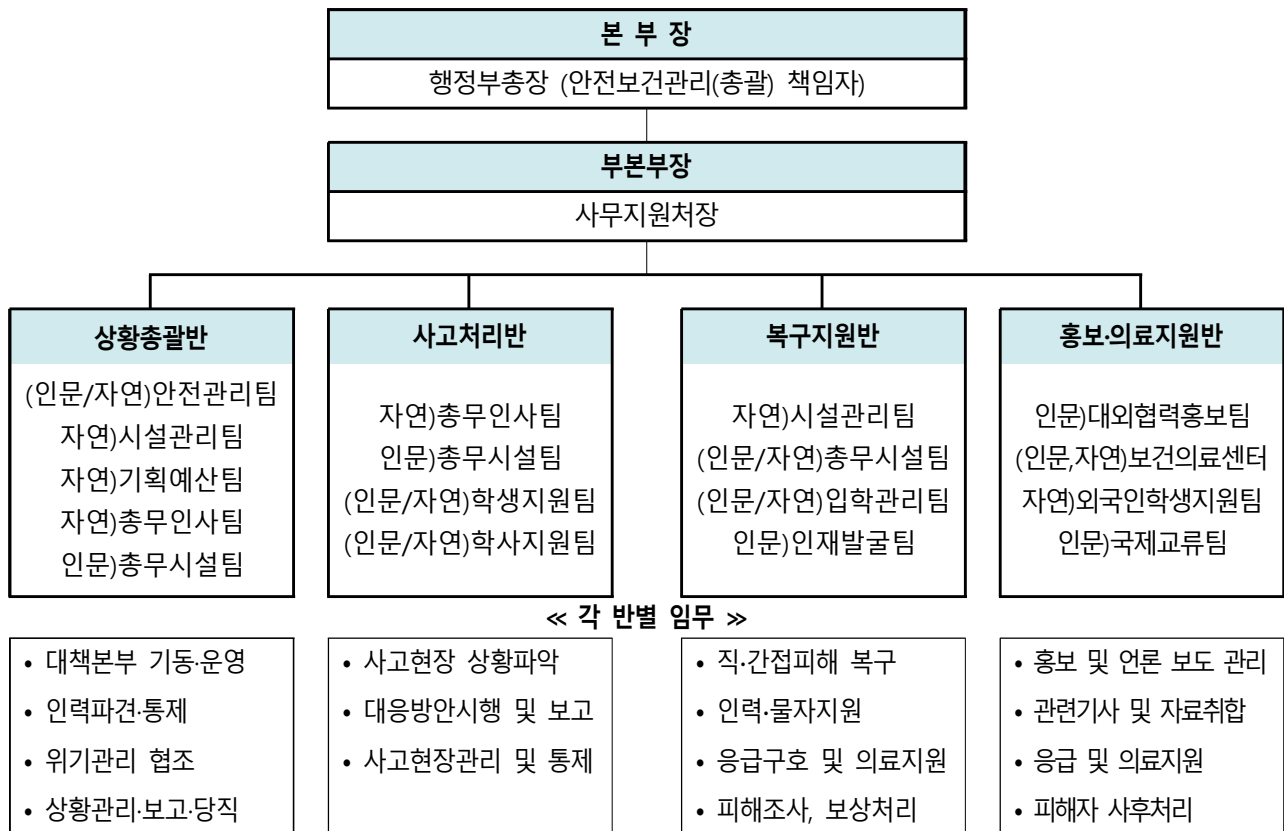
자연	용인소방서 Tel.031-8021-0400	용인시 자연재난팀 Tel.031-324-3742	용인시 중대재해예방TF팀 Tel.031-324-3330
----	----------------------------	-------------------------------	-----------------------------------

인문	서울서대문소방서 Tel.02-6981-5478	서울시 재난대응과 Tel.02-3706-1411	서울시 현장대응단 Tel.02-2133-8026
----	------------------------------	-------------------------------	-------------------------------

○ 각 건물 상시 근무자(경비실) 연락처

자연캠퍼스			인문캠퍼스		
건물명	연락처	비고	건물명	연락처	비고
창조예술관	1114 / 1119	경비본부	행정동	1901 / 1902	
산학협력관	6630		종합관	1905	경비본부
제1공학관	6555		학생회관	1906	
제2공학관	6556		미래관	1907	
체육관	6557		국제관	1908	
체육문화관	6558		방목학술정보관	1909	
학생회관	6560		MCC관 1층	1929	
합박관	6561		MCC관 3층	1930	
디자인조형센터	6562				
제3공학관	6571				
제5공학관	6959				
차세대과학관	6608				
60주년 채플관	6609				
명진당	6610				
학생복지관	6611				
하이브리드관	6612				

2.2.2. 비상 시 조직도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



2.2.3. 교내 비상연락망

구 분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비 고
본부	행정부총장	행정부총장	박재현	031-330-6005	
	사무지원처	처장	주성일	031-330-6009	
자연	안전관리팀	팀장	양재원	031-324-1701	
	시설관리팀	팀장	이유신	031-330-6902	
	기획예산팀	팀장	안경훈	031-330-6010	
	총무인사팀	팀장	김찬우	031-330-6045	
	학생지원팀	팀장	이명우	031-330-6033	
	학사지원팀	팀장	임희찬	031-330-6707	
	입학관리팀	팀장	신석주	02-300-1460	
	외국인학생지원팀	팀장	곽은철	031-324-1056	
	보건의료센터	계장	오선희	031-330-6044	
	안전관리팀	팀장	양재원	02-300-1595	
인문	총무시설팀	팀장	전용우	02-300-1550	
	학생지원팀	팀장	윤강용	02-300-1520	
	학사지원팀	팀장	김학진	02-300-1480	
	인재발굴팀	팀장	신석주	02-300-1460	
	대외협력홍보팀	팀장	김하영	02-300-1490	
	국제교류지원팀	팀장	이정국	02-300-1510	
	보건의료센터	팀원	한병임	02-300-1760	
	인권센터	센터장	김주영	02-300-0818	

2.2.4. 학교 위치 및 비상 대피장소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비상집결지: 대운동장, 소운동장)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비상집결지: 대운동장)

3. 2024년도 안전관리 업무 계획

3.1.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내 용	부 서	편성 예산 (2024년도)	비고
건강검진	직원 건강검진	총무인사팀	120,000	
	연구활동종사자 일반검진	안전관리팀	17,260	
	연구활동종사자(방사선 포함) 특수검진	안전관리팀	20,500	
직원안전관리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팀	-	
직원보건관리	위탁 보건(산업보건역)관리	안전관리팀	15,360	
유해·위험 요인개선	노후 시설 및 환경개선	시설관리팀	2,070,000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업무	안전관리팀	55,00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시행 및 후속조치	안전관리팀	16,000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시행 및 후속조치	안전관리팀	30,300	
폐기물·폐수	실험폐수 및 지정폐기물 처리	안전관리팀	50,000	
안전보건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팀	2,100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안전관리팀	4,100	
	방사선안전교육	안전관리팀	150	
	소방훈련 및 교육	안전관리팀	800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인권센터	24,000	
	교통(보행) 안전교육/캠페인	(자연/인문)학생지원팀	-	
	학생 집단연수 안전교육	(자연/인문)학생지원팀	-	
	현장실습 안전교육	현장실습지원센터	4,000	
	외국인 유학생 안전교육	국제교류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관리팀	1,000	
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팀	2,000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팀	600	
도급업무 안전보건조치	순회점검(수시, 합동)	안전관리팀	200	
	안전보건관리평가제도(수준·실행평가)	안전관리팀	200	
	기타(협업체 회의 및 교육 등)	안전관리팀	200	
보험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안전관리팀	21,000	
	교육시설안전공제(재난,화재 보험)	안전관리팀	85,100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총무인사팀	200,000	
	경영자(대학)배상책임보험	(자연/인문)학생지원팀	60,000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현장실습지원센터	2,000	
합 계	-	-	2,801,870	

3.2. 2024학년도 주요 업무 추진일정

3.2.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추진일정														비 고
			2024년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최초/변경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최초/변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최초/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최초/변경 시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 선임 대행 위탁 용역 계약 체결	최초/변경 시															
	관리감독자 선임	최초/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회/분기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작성 및 점검	1회/반기															
	안전관리 예산 편성	2회/년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신규교육 6시간 / 보수교육 6시간)	1회/2년															
	안전관리자 교육 (신규교육 34시간 / 보수교육 24시간)	1회/2년															
	관리감독자 교육 (신규교육 8시간 / 정기교육 16시간)	16시간/년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24시간)	12시간/반기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추진일정														비 고
			2024년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도급업체 관리 (위탁·용역· 공사 등)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 수립	1회/월															
	작업장 순회점검 기준 수립	1회/주															
	합동 안전·보건점검 기준 수립	1회/분기															
	안전·보건 확보 기준 수립 및 점검	1회/반기															
위험성 평가 실시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1회/년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수시															기계·기구 도입, 산재발생 등
근로자 건강 관리	일반건강검진	1회/년															
	특수건강검진	1회/년															취급 유해인자별 검진 주기 상이함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1회/3년															최초 시행 후 3년 주기
	작업환경측정	1회/년															
작업현장 관리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수시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수시															
	MSDS게시 및 관리	수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수시															
안전사고 관리	산업재해 사고 보고	사고 발생 시															
	재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고 발생 시															

3.2.2. 연구실안전법 이행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추진일정														비 고
			2024년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과기부) 연구실안전법 이행사항 실태조사	1회/년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개정)	사유 발생시															
	사고대응 매뉴얼 등 안전지침 수립	사유 발생시															
	안전관리 예산 편성(추경,본예산)	2회/년															
	연구실 현황관리 (연구실책임자, 연구실담당자)	2회/년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보고·심의 안전 수립 및 위원회 개최	1회/년															
	심의·의결 결과이행 및 관리	수시															기계·기구 도입, 산재발생 등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규/보수 안전교육	1회/2년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신규/정기)	2회/년															2년 주기 법정교육 2025년도 시행
	미이수자 제재조치 및 사후관리	2회/년															
안전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회/년															최초 시행 후 3년 주기
	일상점검 시행현황 확인	수시															최초 시행 후 3년 주기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학부생)	1회/년															
	특수건강검진	2회/년															취급 유해인자별 검진 주기 상이함
	유소견자 사후관리	수시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추진일정														비 고
			2024년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사고 및 보험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등	사유 발생시															
	사고보고 및 보상청구	사유 발생시															
	연구실안전공제 가입 및 운영	1회/년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안전법 준수사항 안내(준수사항 문서 배포)	1회/년															
	실무담당자(연구실담당자) 간담회 개최	사유 발생시															
	실험폐기물(지정/의료폐기물 등) 처리	2회/년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재난의 종류와 사고대응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안전관리팀	이재환	031-324-1704	
	팀원	시설관리팀	박재훈	031-330-6901	
인문	팀원	안전관리팀	김성태	02-300-1596	
	팀원	총무시설팀	우상균	02-300-1559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 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업무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근거: 교육시설공제 보상현황 자료]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자연	3	1	1	1	1	1.40
	인문	2	1	1	0	0	0.80
재산피해 (백만원)	자연	9	12	42	20	71	30.80
	인문	11	5	4	0	0	4.00
합 계		20	17	46	20	71	17.40
사망(실종)	자연	-	-	-	-	-	0.00
	인문	-	-	-	-	-	0.00
부상	자연	-	-	-	-	-	0.00
	인문	-	-	-	-	-	0.00
합 계		0	0	0	0	0	0.00

□ 원인분석

- 점검조사 결과
 - 태풍의 내습에 따른 강풍 및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의 주요원인으로 연도별 피해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는 추세로,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 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 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 (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용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근거: 연간 계정과목 산정 예산]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자연	건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1,147	949	970	3,066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66	72	97	235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121	184	110	415	
	연구실 안전관리비	106	209	228	543	
	화재,재난 보험	51	53	54	158	
합 계		1,491	1,467	1,459	4,417	
인문	건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590	1,101	1,100	2,791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28	61	49	138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2	33	23	58	
	연구실 안전관리비	0	0	0	0	
	화재,재난 보험	25	30	31	86	
합 계		645	1,225	1,203	3,073	

2. 안전사고

2.1 대학 안전사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안전관리팀	이재환	031-324-1704	
	팀원	총무인사팀	이상우	031-330-6046	
	팀원	학생지원팀	지용일	031-330-6719	
	팀원	시설관리팀	정용찬	031-330-6900	
	팀원	외국인학생지원팀	김주현	031-330-1055	
	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박지숙	031-324-1124	
	팀원	보건의료센터	오선희	031-330-6044	
인문	팀원	안전관리팀	김성태	02-300-1596	
	팀원	총무시설팀	우상균	02-300-1559	
	팀원	학생지원팀	김기현	02-300-1501	
	팀원	국제교류팀	민우근	02-300-1497	
	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김다은	02-300-1575	
	팀원	보건의료센터	한병임	02-300-1760	

□ 위험요인

○ (학교 안전사고)

-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 교내 주행 최고속도(15km/h)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반영]
- 단속요원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헬멧 착용 단속 및 개도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홍보 강화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 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의 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애+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보상

❖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대학교
범위	▶ 4년제 및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대상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 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 대형행사 시 인파밀집 안전 사고

- 대형행사(축제, 체육대회 등)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수많은 인파가 병목 지점으로 몰려들어 인파나 장애물에 끼여 질식·압사 등의 인명피해 발생
- 좁은 통로 등에서 다른 군중과 부딪혀 부상을 당하거나 순간 밀집도가 증가하여 압사 등의 위험 발생
- 사전준비(안전요원 배치 및 행동요령 숙지, 수신호 및 통행로 확보/통행방향 설정 등)가 미흡할 경우 부상 또는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예방	• 행사 주최 시 관리조직을 편성하여 주요 건물 및 인파가 밀집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구역 설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역할 및 임무,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수립 및 전파 • 다수 인원이 밀집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 및 사전교육 실시 - 수신호, 통행로 확보 및 통행방향 설정을 통해 순간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현장질서 유지 - 축제 시 사전교육을 통해 배치계획 및 행동요령 숙지, 눈에 띄는 근무복장 착용, 안전통제선 설치 • 실외에서 불꽃놀이와 같이 폭죽 등을 사용하는 경우, 풍향에 따라 날 수 있는 잔재물 등이 관중석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 및 점검 실시
대비 · 조치	• 긴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피해상황 파악 및 사고전파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 - 사고장소에 긴급차량(구급차/소방차/경찰차 등)이 사고대응 및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통행로 확보 - 경찰서/소방서 및 교내 관계부서(학생지원팀/총무시설팀, 시설관리팀 등)는 추가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재발 방지	•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및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 대형행사 종료 이후, 동종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등의 문제점을 기록·분석하고 대학안전관리계획 수시로 반영 -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전교육 및 회의를 통하여 올바른 축제문화 확립
--------------	---

(안전 매뉴얼)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몰려 있는 곳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한 생활을 위해 예방 대책 실행(인파 밀집 상황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인파밀집 안전 사고 예방 매뉴얼

-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전

1.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음
2. 배치도를 알아두고 충분한 대피공간, 출입로,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
3. 종합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함

-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1.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서는 넓은 공간으로 신속하게 이동
2. 마음이 급하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을 밀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피
3. 키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으므로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함
4. 혹시 두고 온 물건이 있더라도 절대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음
5. 교직원의 안내를 받아 줄을 서서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이동

- 질식사고 피하기 '앞으로 팔짱끼기'

1. 팔짱을 끼고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
2. 가슴 앞쪽으로 폭신한 가방이나 인형을 안음

- 넘어졌을 때

1. 넘어졌을 경우 몸을 웅크리고 머리, 가슴 등 중요 신체 부위를 보호
2.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일어나 안전한 자세를 유지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외국인 단체 상해보험 (학부,대학원X)	자연	62	91	가입예정	153	어학당 원생 대상
	인문	63	52	가입예정	115	
대학종합보험	공통	54	53	가입예정	107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공통	136	162	120	418	
계		125	143		268	

2.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안전관리팀	이재환	031-324-1704	
	팀원	시설관리팀	박재훈	031-330-6901	
인문	팀원	안전관리팀	김성태	02-300-1596	
	팀원	총무시설팀	우상균	02-300-1559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 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없음)

□ 원인분석

○ 시설관리팀 자체점검 결과

- 「교육시설법」 및 관련 기준·지침의 제정에 따른 신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교육시설 안전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최근 중대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점검·관리 관리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근거: 연간 계정과목 산정 예산]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자연	121	184	110	415	
	인문	2	33	23	58	
교육시설안전공제	자연	46	51	58	155	
	인문	24	27	28	79	
계		193	295	219	707	

2.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안전관리팀	강홍식	031-324-1703	
	팀원	안전관리팀	이재환	031-324-1704	

□ 위험요인

- **(화학)**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미흡, 시약용기 라벨 미부착, 시약선반 안전바 미설치, 화학물질의 성상별 미분류, 시약용기 밀폐 미흡, 시약장 시건 상태 및 관리 미흡, 폐액용기 밀폐, 관리 미흡 및 성상별 라벨 미부착 등
- **(소방)** 인화성 물질 다량 보관, 소화기 미비치 및 관리미흡, 소화전 및 출입구 앞 장애물 적재, 피난대피로 확보 미흡, 비상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미설치 등
- **(가스)**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가스용기 고정 불량,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미설치, 가스용기 부식 및 변형, 가스 감지기 등 안정장치 설치 미흡
- **(전기)** 바닥전선 관리 미흡, 연구실 내 전열기 비치, 전기충전부 노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분전반 주변 물건 적재, 분전반 내 회로명 및 절연덮개 미부착
- **(생물)** 고압멸균기 사용대장 미비치, 의료폐기물 덮개 미설치로 인한 에어로졸 관리 미흡,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출입 통제 미흡 등
- **(기계)** 위험기계·기구 안전수칙 게시 미흡,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안전덮개 미설치, 법정 안전검사 미 실시, 동력차단장치 등 비상조치 장치 미흡 등
- **(위생)**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구급용구 관리 미흡, 개인보호구 미비치 및 관리 미흡, 인화물질보관장의 필터 미교체, 흡후드 관리 미흡 등

□ 피해현황 [자연캠퍼스만 해당]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1	0	1	0.40
재산피해(백만원)		0	0	1	0	0	0.2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2	0.40
	계	0	0	0	0	2	0

□ 원인분석

- **(부주의)** 미사용 폐시약(질산) 위탁처리를 위하여 운반하던 중 카트에 올려두었던 질산용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누출됨 (2023년)
- **(안전의식 부족)** 폐시약 운반 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쏟아짐, 깨짐, 누출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종이상자에 밀봉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하나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였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개인보호구 착용)** 연구활동은 물론 연구활동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함
- **(안전교육 강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 함
- **(사고보고 준수)** 사고발생 즉시 안전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고가 수습될 수 있도록 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보수	170	119	138	427	
연구실 안전점검	10	10	10	30	
상해보험 가입	22	21	21	64	
건강검진	10	30	37	77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16	16	16	48	
개인보호구 구입	5	13	6	24	
계	233	209	228	670	

3. 감염병 확산

3.1.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총무인사팀	이상우	031-330-6046	
	팀원	보건의료센터	오선희	031-330-6044	
인문	팀원	총무시설팀	박신우	02-300-1555	
	팀원	보건의료센터	한병임	02-300-1760	

□ 비상연락망

업무명	구분	캠퍼스	담당	연락처
확진자 발생보고	학부생 대학원생 미래교육원생 학생회(동아리) 교직원	자연	자연과학대학 교학팀장	031-330-6149
			공과대학 교학팀장	031-330-6349
			예술체육대학 교학팀장	031-330-6254
			건축대학 교학팀장	031-330-6982
			국제학부 교학팀	031-324-1056
			ICT융합대학	031-330-1041
			방목기초교육대학 교학팀장(자연)	031-330-6639
			대학원 교학팀장(자연)	031-330-6116
			미래교육원 교학팀(자연)	031-330-1502
			학생지원팀장(자연)	031-330-6033
		인문	인문대학 교학팀장	02-300-1502
			사회과학대학 교학팀장	02-300-0657
			경영대학 교학팀장	02-300-0732
			법과대학 교학팀장	02-300-0802
			ICT융합대학	02-300-0642
			미래융합대학 교학팀장	02-300-1561
			방목기초교육대학 교학팀장(인문)	02-300-0852
			국제교류지원 팀장	02-300-1510
			대학원 교학팀장(인문)	02-300-1624
			미래교육원 교학팀(인문)	02-300-1803
			학생지원팀장(인문)	02-300-1520
역학조사 취합		자연	보건의료센터	031-330-6044
		인문	보건의료센터	02-300-1760
총괄		자연	총무인사팀	031-330-6046
		인문	총무시설팀	02-300-1555

□ 감염병 위기 형태 및 위기 징후

위기 형태	위기 징후
1. 해외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감염병	1.1. 주변국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인접국가 또는 교류가 활발한 국가 등
	1.2. 겨울 철새 이동 유입 *동물인플루엔자 등
	1.3. 새로운 감염병 매개체 발생 또는 유행 확산 *모기, 진드기, 동물 등
2.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유통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 의해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이외에도 위생 악화에 따라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2.1. 빈발시기 도래 *태풍, 호우, 기타 요인 등
	2.2. 재난지에서 의심환자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 또는 위생 악화에 따라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2.3. 기상이변(폭염, 한파 등)으로 인하여 의심환자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 또는 위생 악화에 따라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 **(질병관리청 감염병 교육 및 안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교육 및 안내자료를 통해 대학 방역수칙 및 개인방역수칙을 수립하고 전파
- **(비대면 교육)**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감염병 확산 전파 방지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염병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감염병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 (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 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감염병 발생 대응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감염병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염병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 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감염병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감염병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 격리 시,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생 : 출석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병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진 문자,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조치

재학생(교직원) 확진자	단과대학 교학팀 (소속부서) 신고	소속학과(부서) 역학조사	총무부서
⇨	⇨	⇨	⇨
·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확진 결과 통보 (확진 판정)	· 확진자는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본인 단과대학 교학팀 또는 소속부서에 신고 · 교·강사에게 확진 사실 보고 및 공결처리요청 · 7일간 자가격리 및 등교(출근)중지	· 단과대학(학과) 또는 소속 부서에서는 총무부서에 유선보고하여 주시고, Myiweb에 COVID-19 확진자발생보고 프로그램에 확진자 정보 입력 · 캠퍼스 별 총무부서에 역학조사(이동동선) 내용 통보	· 비상대책위원회 보고 · 총무부서 확진자 이동동선 소독 ·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인원, 이동동선 등) · 홈페이지 게재 · SMS 문자발송 · 확진자 현황 교육부 보고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 감염병 대응 단계별 주요 내용

대응단계	내 용	
예방 단계	상황	학교 내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 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내용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구축(조직구성, 계획 수립) 및 예방 활동 수행 -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수동감시체계 운영, 방역 활동 등
대응 제 1단계	상황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의 발견 및 확인 단계 ※ 감염병 유증상자가 있음
	기간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후부터 (의심)환자 발생 혹은 감염병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 까지
	내용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여 결과를 확인 후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여부 확인
	[감염병 증상에 대한 감시] - 대학보건실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을 가진 학생/교직원을 발견 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권장하고, 이 사실을 해당 교내 감염병 관리자에게 통보 - 기숙사의 감염병 관리자는 기숙사 입소생 중 아프거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권장 진료 결과 확인	
대응 제 2단계	상황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의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있음
	기간	학교 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한 순간부터 추가(의심) 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유행 의심 기준을 충족하거나, 기존 (의심)환자의 완치 및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내용	감염병 (의심)환자의 추가 발생을 파악하여 유행의심 여부 판단
	활동	신고가 필요한 법정 감염병인 경우 학교장은 관할 보건소장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 능동적인 감시체계 운영 방안에 따라 감시범위와 방법을 결정 실시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감시] -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의심)환자 진단을 받은 학생/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신고 - 감염병 (의심)환자가 결석/결근/결강 등의 증빙용으로 제출한 진단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 - 종류 : 법정감염병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홍역, 결핵 - 신고방법 : 법정감염병 환자신고 신고 양식을 활용한 관할 보건소 신고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대응 제 3단계	상황	학교 내 유행 확산 ※ 감염병 (의심)환자가 2명 이상 있음
	기간	유행의심을 확인한 후부터 해당 감염병으로 인한 기존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을 때까지
	내용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의 유행 시 대응 활동을 통해 유행 확산을 방지
	활동	-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하는 「유행의심」 상황임을 학교장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함 - 정부 지침 및 자체적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 감염병 환자 정보 기록 관리 ※ 질병관리본부(☎1339)로 연락이 안될 경우 지역별 콜센터 (☎지역번호+120)
대응 제 4단계 (복구단계)	상황	유행 종결 및 복구
	기간	기존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의심)환자 발생이 없을 때 부터 사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내용	유행종료 보고 및 선언, 사후조치(수업 결손 보충, 심리지원) 실시
	활동	-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학교장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유행종료에 따른 안내문 교내 홈페이지 공지 및 SNS를 통한 배포 - 학교장은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의 유행 시 대응 활동을 중단하고 예방단계로 복귀를 명령함

□ 교내 역학조사

○ 역학조사 시 해야 할 일

- 역학조사관의 안내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 및 대응
- 보건소-학교 합동 대응팀 구성: 밴드, 단톡방 등
-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 안내 문자 발송
- 역학조사 사전 준비자료 작성 및 제공
- 교육기관 정보, 직원 및 학생정보·환경정보, 확진환자 정보, 기관 내 확진자 접촉자 명단, 확진 환자 관련 준비 자료

○ 역학조사 내용

- 개별 역학조사서 작성 및 보고
- 감염원, 감염경로 및 위험요인 파악
- 확진검사 실시를 위한 검체 채취 및 의뢰
- 유행 종료 후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시·도에 보고

○ 역학조사 사전 준비자료 작성 및 제공

- 교육기관 정보
- 직원 및 학생정보 환경정보
- 확진환자 정보
- 기관 내 확진자 접촉자 명단
- 확진환자 관련 준비 자료

□ 주요증상에 따른 의심 질환

주 증상	동반 증상	의심 질환 ¹⁾
구토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발열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복통	황색포도알균감염증
기침	재채기, 맑은 콧물, 기침, 발열	감기
	2주 이상 마른기침	결핵
	개 짖는 기침 소리, 쉼 목소리	급성 폐쇄성 후두염
	기침, 가래	기관지염
	2주 이상의 발작성 기침, 구토	백일해
	만성 기침, 누런 콧물, 두통	부비강염
	호흡곤란, 마른 기침, 천명	천식
	발열, 기침, 가슴 통증	하기도감염(폐렴)
	발열, 심한 두통, 구토, 경련, 의식 저하	뇌수막염(세균성)
발열	피로감, 발열, 복부불쾌감, 오심, 구토	A형간염
	인후통, 기침, 콧물, 심한 근육통	급성호흡기증후군(조류 인플루엔자)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주기적 반복	말라리아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수족구병
	인후통, 기침, 콧물, 심한 근육통	인플루엔자
	발열, 복통, 쇠약감, 변비	장티푸스
	피부의 점상출혈, 구역, 구토, 설사, 식욕부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특징적인 가피, 오한, 피부발진	프쯔가무시증
	설사, 쇠약감	파라티푸스
발진	전신에 수포성 발진, 가려움증	수두
	얼굴에서 급속도로 전신으로 퍼지는 발진	풍진
	온몸의 홍반성 구진,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홍역
설사	복통, 설사, 열, 오심, 구토, 복통	살모넬라균 감염증
	고열, 복통, 설사, 혈변, 구토, 뒤무직	세균성 이질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발열, 구토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수양성 설사, 구토	콜레라
인후통	편도에 특징적인 회백색 위막	디프테리아
	갑작스런 고열과 근육통	인플루엔자(독감)
침샘비대	주로 귀밑 통증, 발열	유행성이하선염
눈 충혈	안통, 눈곱, 눈물, 눈부심	급성출혈성결막염
	안통, 눈곱, 눈물, 눈부심	유행성각결막염

1) 감염병 이외의 비감염성 질환도 포함함

□ 주요 감염병의 관리 방안(권장 등교 중지 기간)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¹⁾²⁾	잠복기 ³⁾	밀접 접촉자 파악	마스크 착용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막염, 후두개염, 폐렴, 관절염 등	항생제 치료 후 48시간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4일	○	×
감기균	발열, 기침, 객담 등 호흡기계 증상	이환기간 내내	등교 중지 안 함.	병원체마다 다양 (보통 2-14일)	×	○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수년까지 가능 (50% 2년 이내)	○	○
급성 출혈성 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4일-1주일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8-48시간	○	×
노로 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발열	급성기부터 설사가 멈추고 48시간 후까지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24-48시간 (평균 33시간)	○	×
백일해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2주간 전염력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7-20일 (평균 5-10일)	○	○
성홍열	미만성 구진,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오한 및 인후염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1-3일	○	○
수두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수포가 생기기 1-2일 전부터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이 될 때 까지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10-21일 (평균 14-16일)	○	○
수막구균성 수막염	두통, 발열, 경부 경직, 오심, 구토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10일 (평균 3-4일)	○	○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발병 후 7일간이 가장 전염력 강함, 피부 병변(수포)에 가피가 생성될 때까지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3-7일	○	○
유행성 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14일까지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5-7일	○	×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 발생 3일전부터 발생 후 5일까지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14-25일 (평균 14-18일)	○	○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5일까지	유행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없지만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	1-4일 (평균 2일)	×	○
풍진	구진성 발진, 림프절 종창, 미열, 등 감기 증상	발진 생기기 7일 전부터 생긴 후 7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14-23일 (평균 16-18일)	○	○
홍역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4일 후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4일까지	7-21일 (평균 10-12일)	○	○

1)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 기간으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의 환자 격리 기간을 바탕으로 작성함

2) 등교 중지 기간은 휴일을 포함함.

3) 감염 시작 시점부터 증상과 징후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

□ 감염병 예방 홍보 문화조성

(결핵 및 에이즈 예방 교육 캠페인)

- 목적: 결핵 및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대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결핵 감염병 예방 리플릿 배부
 - 에이즈 신속검사(익명검사) 절차 안내, 에이즈 예방 홍보물(콘돔 등) 배부
- 대상 및 인원: 교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 결과 총 61명 참여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감염병 예방 예산	자연	50	60	5	110	
	인문	2	2	2	6	

4. 범죄

4.1. 일반범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총무인사팀	이상우	031-330-6046	
	팀원	학생지원팀	지용일	031-330-6719	
인문	팀원	총무시설팀	박신우	02-300-1555	
	팀원	학생지원팀	김기현	02-300-1501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 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원인분석

○ 학생징계 자료 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절도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계도활동과 방범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서대문경찰서, 용인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수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범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건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 시 통합경비본부, 총무인사팀, 각캠퍼스별 학생지원팀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관련 매뉴얼 : [별첨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 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비전·목표 참조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CCTV 운영	자연	87	87	83	174	경비용역비에 포함
	인문	-	-	-	-	
주간·야간 경비	자연	670	844	869	1,514	
	인문	709	720	800	1,429	
계		1,466	1,651	952	3,117	

4.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업무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업무 또는 업무장의 업무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공통	센터장	인권센터	김주영	02-300-0818	
자연	연구원	인권센터	김혜승	031-330-6242	
인문	연구원	인권센터	송가영	02-300-1779	
	팀원	인권센터	배소현	02-300-1778	

참고 자료 명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교육 및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인 접근, 편지, 전화, 문자, 컴퓨터통신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중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 건수	성희롱	4	1	0	3 (2차가해 1건포함)	0	1.6
	성폭력	1 (2차가해)	0	0	0	0	0.2
	계	5	1	0	3	0	1.8
피해자 수	성희롱	4	1	0	2	0	1.4
	성폭력	1 (2차가해)	0	0	0	0	0.2
	계	5	1	0	2	0	1.6

□ 원인분석

- 발생 건수와 피해자 수가 실제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피해로 인한 상담 건수가 인권센터로 접수되고 있음. 이는 잠재적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예방적 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명지대학교 전 구성원대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인권교육)

- 교원, 직원 및 학생 그룹 및 대상별 오프라인 교육
- 교원, 직원, 학부생, 대학원 대상 온라인 교육
- 교육 콘텐츠 개발 (캠페인, 팸플렛, 공모전 등)

○ 인권센터 운영(성희롱·성폭력 상담소 포함)

-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 직무교육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및 인권심의위원회 운영

참고 자료 명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6조(인권교육 실시) ① 인권센터는 우리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변경 2022.5.1.)

제6조2(예방교육 내용)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2.5.1.)

1. 인권침해 관련 내용
2.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3. 사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6. 기타 사건예방에 관한사항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교육 및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인 접근, 편지, 전화, 문자, 컴퓨터통신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5.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권침해 등”이란 차별행위,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중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8. “사건관련인”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으로 다음과 같다.
 - 가.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나.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다.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라.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마.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바.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우리 대학교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9.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해당 된다.(변경 2022.5.1.)

10. "구성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변경 2022.5.1.)

제 2 장 인권센터 조직과 업무

제4조(조직) 인권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구성원을 둔다.

1. 인권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총장이 임명한다.
(변경 2022.5.1.)
2.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인권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에 상담, 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의 자격은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4. 인권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담당자로 남·여 각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연구원의 상담 및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2023.6.1.)
5. 인권센터에는 법률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법률자문위원은 법학박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6.1.)
6. 인권센터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호번호 변경 2023.6.1.)

제5조(인권센터의 업무)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와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변경 2023.6.1.)
3.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 민원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처리(변경 2023.6.1.)
4.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구(변경 2023.6.1.)
5. 학내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인권교육 실시) ① 인권센터는 우리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변경 2022.5.1.)

②신규 임용된 본교 구성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22.5.1.)

③센터는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하여 관련 교양과목을 1과목 이상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변경 2022.5.1.)

제6조2(예방교육 내용)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2.5.1.)

1. 인권침해 관련 내용
2.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3. 사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6. 기타 사건예방에 관한사항

제 3 장 위원회

제 1 절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인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변경 2022.5.1.)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처장, 학생처장, 사무지원처장, 학생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직원 및 학생 및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변경 2022.5.1.)

④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5.1.)

⑤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변경 2022.5.1.)

⑥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항번호 변경 2022.5.1.)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인권센터의 운영규정 및 관련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소집·의결) ①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2 절 조사위원회

제11조(조사위원회 설치) 센터장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교직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경과 및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 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결과 보고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징계나 경고조치 등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 제시

제 3절 인권심의위원회

제14조(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변경 2022.5.1.)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처장, 학생처장, 사무지원처장, 학생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전임교원, 직원, 학생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 관련 사건에만 참여한다.(변경 2022.5.1., 2023.6.1.)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변경 2022.5.1.)

제16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등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가해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1.)
4. 그 밖에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
(호번호 변경 2023.6.1.)

제1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변경 2022.5.1.)

③ 상담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⑤ 회의가 종료되면, 센터장은 심의결과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2023.6.1)

제 4 장 조사와 구제절차

제18조(상담 및 신고) ①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해당 사건의 상담 신청 및 신고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는 별표1의 양식에 의한다.

③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인권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 신고자에게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⑥인권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9조(임시조치) 센터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의 결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등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등
3. 피신고인에 대한 교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제한
4. 피신고인이 교직원인 경우, 당해 교원의 수업 및 업무 배제
5. 수강과목, 지도교수 또는 근무부서 등의 변경
6.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③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은 센터에서 조사하며, 그 밖의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신설 2023.6.1.)

⑤제1항에 따른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항번호 변경 2023.6.1.)

⑥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항번호 변경 2023.6.1.)

- ⑦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항번호 변경 2023.6.1.)
- ⑧ 신고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센터장의 결정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항번호 변경 2023.6.1.)
- ⑨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심의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센터장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해당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인권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항번호 변경 2023.6.1.)
- ⑩ 조사를 마치면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의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여야 한다.(항번호 변경 2023.6.1.)

제21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사건 관련인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5. 필요시 면담내용의 기록과 녹취, 녹화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 및 중재) ① 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를 위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 ③ 조정 및 중재가 성립된 경우 센터장은 각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 ④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한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⑤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4조(신고의 각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18조 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의 기각)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센터장은 신고가 기각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구제조치 등) ①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3. 피신고인의 사과
 4.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
 5. 피신고인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명령
 6.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누구든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센터장은 사건 처리 과정 중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자나 그 소속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요청)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변경 2022.5.1.)

1. 조사결과 피신고인이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2.5.1.)
2. 피신고인이 재범일 경우(신설 2022.5.1.)
3.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신설 2022.5.1.)
4. 피신고인이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의 위협을 하거나 보복을 가한 경우(신설 2022.5.1.)
5.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 가해를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2.5.1.)
6. 피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신설 2022.5.1.)
7. 신고인이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신설 2022.5.1.)

②(삭제 2022.5.1.)

③ 피신고인이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변경 2023.7.1.)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변경 2023.6.1., 2023.7.1.)

③ 심의위원회가 재심을 결정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조사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제척, 기피, 회피) ①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고인은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 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각각 그 가부를 결정하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 및 의결에서 배제된다.

④ 조사위원 및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당사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와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②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인권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③ 제3자인 신고인, 피해자의 대리인 등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④ 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조치, 권고, 제30조에 따른 징계요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유지·사건관계인 보호) ①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연령·직업·주소·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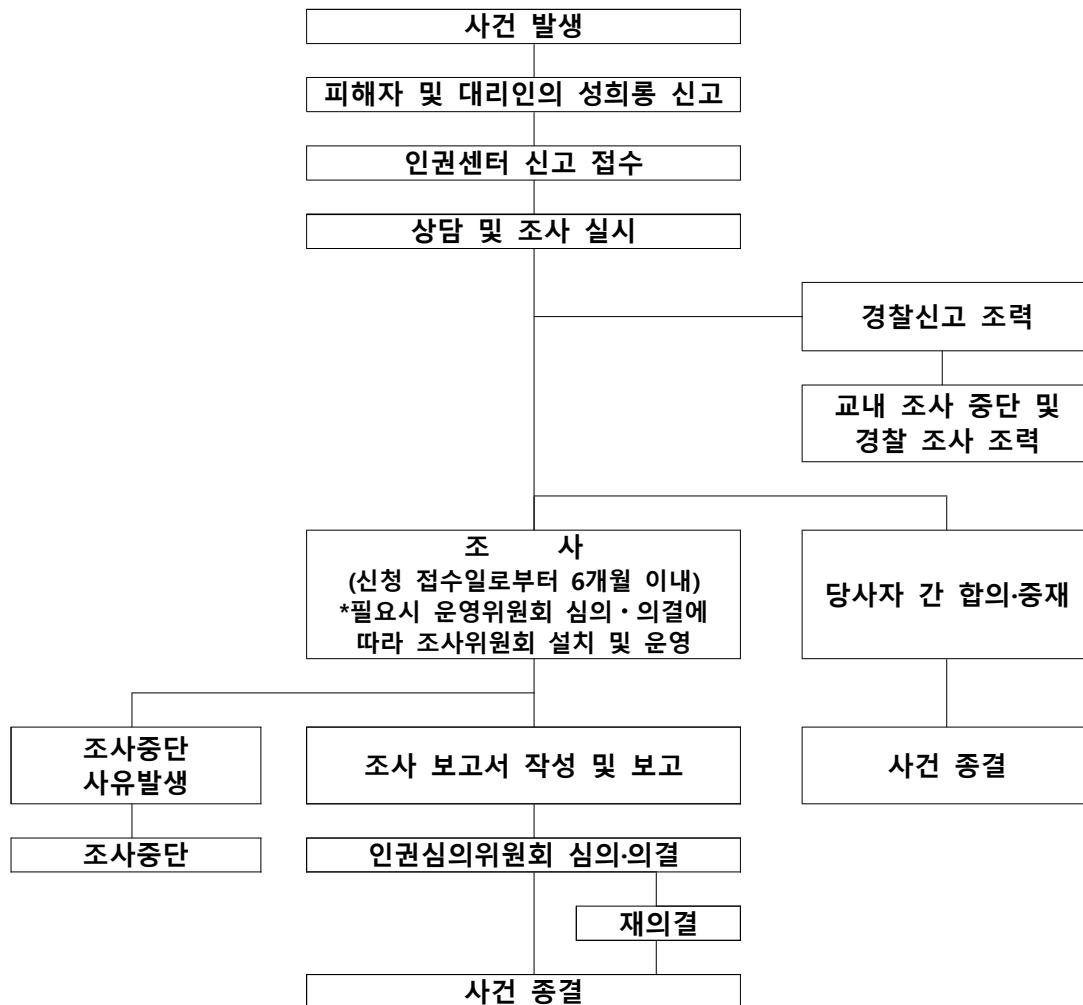
③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인권침해 등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32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인권심의위원회 조치
 -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 피신고인의 사과
 -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
 - 피신고인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명령
 -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인권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징계 요구 및 발의 가능
 - 기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의 신청 : 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인권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피해자 지원 : 심리상담 및 기타 가능한 지원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인권센터(교비)	15	15	18	48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국비)	3	3	3	9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국비)	5	6	4	15	
계	23	24	25	72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5.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 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안전관리팀	김준경	031-324-1702	
인문	팀원	안전관리팀	김성태	02-300-1596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업무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 장애 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 이행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 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업무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기관 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 확인)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 서류의 보존기한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 일 기준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 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업무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업무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이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학교장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 또는 업무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업무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안전관리팀	김준경	031-324-1702	
인문	팀원	안전관리팀	김성태	02-300-1596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업무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업무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업무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업무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업무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업무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 - 안전보건교육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 안전조치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노사 간담회(또는 안전관련 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 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이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6. 기타 상황·사태

6.1 비상사태 (전시, 침투·도발 등)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비상계획팀	이규연	031-330-6640	
	팀원	안전관리팀	김준경	031-324-1702	
인문	팀원	비상계획팀	봉하민	02-300-1901	
	팀원	안전관리팀	김성태	02-300-1596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대비방안

- 전시, 사변,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는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총무계획 등에 따른 평시·전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필요

□ 대응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전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 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총무 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명지대학교 총무(교육)실시계획 수립후 교육부 승인을 득함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국가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가입

1.1.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자연캠퍼스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
인문캠퍼스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

1.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학생,교직원 대상]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업무)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업무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 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보상한도(자연, 인문캠퍼스 동일함)

○ 학생 대상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100,000	3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5,000	5,000	
	사망,후유장해	-	-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5,000	5,000	
	사망,후유장해	10,000	10,000	

○ 교직원 대상

- 보 험 명 : 2023 단체상해보험(2023년 5월 ~ 2024년 4월)
- 보 험 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 대 상 : 전임 교직원(계약직원 포함) 및 배우자(신청한 자에 한함)
- 부 담 금 : 학교부담(본인부담 없음)
- 보상한도 : 세부내용 첨부 참조

구 분		지 급 사 유	보장금액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시	1억원
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1억원
질병사망, 일반사망		질병으로 사망시	3천만원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3천만원
암진단비		최초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갑상선암 2백, 경계성종양 2백, 기타피부암 1백)	1천만원 (각 최초 1회限)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최초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출혈 진단확정시	1천만원 (각 최초 1회限)
선택(*)	입원의료비 및 비급여 의료실비	질병 또는 재해, 분만 등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한방, 치과 포함 / 성형,라식,보철 등은 제외) (본인부담금의 90%(급여) ~ 80%(비급여) 상급병실료 : 차액의 50%, 1일평균 10만원 한도 도수치료/주사제/MRI및MRA(통원 포함)	1천만원 350/250/300만원
	입원일당	실손의료비 개인가입자(첫날부터 최대 180일) 분만(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제외	

- 입원의료비 세부내역

항 목	보상내역
본인부담금	80% ~ 90% 보상
병실료	기본병실료와 상급병실료의 차액 50% 보상 주1. 1일 5만원까지만 인정
치질등 항문질환	발생비용중 급여부분만 보상
요실금 질환	보상 제외

1.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자연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 · 폭발 · 붕괴·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자연캠퍼스]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대상 건물	건물 면적 (㎡)	일반건물 재난담보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	부속물	물품 공제회비	합 계	비고
2022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2-01-01 2022-12-31	41	195,403	25,402	1,495	1,068	18,401	46,366	
2023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3-01-01 2023-12-31	41	195,403	29,310	1,495	1,093	19,088	50,986	
2024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4-01-01 2024-12-31	41	195,403	29,310	1,495	1,911	25,386	58,102	

□ 보상한도 [자연캠퍼스, 2024년도 기준]

구분		건물수/ 물품수	가입면적(㎡)	가입금액(천원)	공제회비(천원)	비고
일반건물		41건물	195,403	440,447,906	29,310	
고가건물		0건물	0	0	0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	대인	41건물	195,403	인당:300,000 사고당:300,000	1,495	
	대물			사고당:1,000,000		
부속물(공작물)		6건	-	7,707,341	1,911	
물품		8,908건	-	76,236,167	25,386	
합계			-		58,102	

□ 가입현황 [인문캠퍼스]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대상 건물	건물 면적 (㎡)	일반건물 재난담보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	부속물	물품 공제회비	합 계	비고
2022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2-01-01 2022-12-31	10	129,113	16,785	988	167	6,114	24,054	
2023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3-01-01 2023-12-31	10	129,113	19,366	988	167	6,074	26,595	
2024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4-01-01 2024-12-31	10	129,113	19,366	988	285	7,487	28,126	

□ 보상한도 [인문캠퍼스, 2024년도 기준]

구분		건물수/ 물품수	가입면적(㎡)	가입금액(천원)	공제회비(천원)	비고
일반건물		10건물	129,113	272,170,204	19,366	
고가건물		0건물	0	0	0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	대인	10건물	195,403	인당:300,000 사고당:300,000	988	
	대물			사고당:1,000,000		
부속물(공작물)		8건	-	1,152,176	285	
물품		2,773건	-	22,483,791	7,487	
합계					28,126	

1.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연구실 안전공제	2021-05-01 2022-04-30	3.9	5,331	20,577	-	-	-	-	
2023	연구실 안전공제	2022-05-01 2023-04-30	3.5	5,212	18,474	-	-	-	-	
2024	연구실 안전공제	2023-05-01 2024-04-30	3.9	5,178	20,447	2	451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천원)	비고
유족급여	200,000	
장해급여	200,000	
요양급여	2,000,000	
입원급여	50	
수업료 손실 지원금	1,000	정규학기 미수료,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300	잔여학기 사용불능,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Ⅳ.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교육 · 훈련

1. 재난안전 교육·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안전관리팀	이재환	031-324-1704	
인문	팀장	안전관리팀	김성태	02-300-1596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 시간	이수인원	예산
자연	(생활관)학생	2023.4.13.	2	1,511	0
		2023.10.11.~2023.10.12.	2	1,349	0
	교직원	2023.12.18.~2023.12.27	2	538	0
인문	(생활관)학생	2023.4.17.	2	502	0
		2023.9.18.	2	547	0
	교직원	2023.12.18.~2023.12.27	2	538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소방안전훈련	- 소방안전 기본 내용(소화, 통보, 피난, 응급처치 등) - 겨울철 화재 및 전기화재 예방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이수인원	예산
자연	(생활관)학생	상반기 중 시행	2	미정	0
		하반기 중 시행	2	미정	0
	교직원	상반기 중 시행	2	미정	0
		하반기 중 시행	2	미정	0
인문	(생활관)학생	상반기 중 시행	2	미정	0
		하반기 중 시행	2	미정	0
	교직원	상반기 중 시행	2	미정	0
		하반기 중 시행	2	미정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소방안전훈련	- 소방안전 기본 내용(소화, 통보, 피난, 응급처치 등) - 겨울철 화재 및 전기화재 예방 - 화재 대피 훈련 및 자위소방대(시설관리팀) 교육 훈련

2.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훈련기간	훈련대상	비고
자연	민방위(민방공)훈련	2023.08.23	교내 구성원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재난)훈련	2023.11.01	교내 구성원	안전한국훈련 연계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민방위(민방공)훈련	개요 : 적 공습상황 따른 경보발령 교내 구성원 대피훈련 - 공습상황에 대비하여 실제 행동 위주의 훈련 실시 - 총장님, 대학본부 교직원 및 각 부서장 중심 적극 참여로 훈련 내실화 - 가까운 건물 지하로 대피하여 민방위 라디오 방송 청취 - 건물별 방송시설 민방위 라디오 방송(KBS FM 99.5 MHz)
민방위(재난)훈련	개요 : 명진당 전기누전으로 화재발생 및 대피훈련 - 중간고사 기간으로 인해 명진당에 한하여 실질적인 대피훈련 실시 - 참여부서 대피유도/점검 : 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 학술정보봉사팀, 예비군연대 음원송출 : 미디어센터/학교방송국 - 준비활동 : 화재 대비 대피훈련 관련부서 사전회의 - 홍보활동 : 교내 전광판 게시, 현수막 설치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훈련기간	훈련대상	비고
민방위(민방공)훈련	2024.05월(일자 미정)	교내 구성원	전국
민방위(민방공)훈련	2024.08월(일자 미정)	교내 구성원	전국
민방위(재난)훈련	2024.10월(일자 미정)	교내 구성원	전국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민방위(민방공)훈련	▪ 유사시 대피 및 대처 요령 교육 및 훈련

3.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안전관리팀	강홍식	031-324-1703	
	팀원	안전관리팀	이재환	031-324-1704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대상자	이수자(이수율)
신규교육훈련	신입생/신규 임용종사자	2	1,187	76%
정기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2	9,545	71%
화학물질 누출 대응 훈련	안전한국훈련	1	-	-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신입생, 신규임용종사자 대상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
정기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교원/연구원/대학원생/학부생) 대상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
화학물질 누출 대응 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기간 시행하는 화학물질 누출 대응 훈련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신입생/신규 상시종사자	2	1,200여명	4,100천원
정기교육훈련	학부생/상시종사자	2	9,500여명	-
화학물질 누출 대응 훈련	안전한국훈련	1	-	1,000천원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신입생, 신규임용종사자 대상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
정기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교원/연구원/대학원생/학부생) 대상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

4. 심폐소생술 교육·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 관련 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함
-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응급장비의 점검, 사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원	보건의료센터	오선희	031-330-6044	
인문	팀원	보건의료센터	한병임	02-300-1760	

□ 훈련목적

-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1차 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에 대한 이론교육, 실습진행
- 2차 영유아 기도폐쇄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이론교육 및 실습진행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구 분	추진 내용	교육인원
공통	심폐소생술 교육 (자연 및 인문캠퍼스 학부생)	182명
자연캠퍼스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론 및 실습 교육	139명
인문캠퍼스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론 및 실습 교육	73명

□ 기타 사항

- 매월 1회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및 체크 리스트 작성